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7조제3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 중 “저장·처리·처분시설”을 “저장·처리·처분 시설”로 하며, 같은 조 제7항을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사항

- 가. 방사성폐기물의 저장·처리 시설 및 그 부속시설(이하 “방사성폐기물저장시설등”이라 한다)을 건설·운영하려는 자의 경우: 해체계획
- 나. 방사성폐기물의 처분시설 및 그 부속시설(이하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등”이라 한다)을 건설·운영하려는 자의 경우: 폐쇄 및 폐쇄 후 관리

⑦ 법 제63조제2항에 따른 허가신청서를 제출받은 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89조의2 및 제93조의2부터 제93조의8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9조의2(기술능력) 법 제64조제1항제1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건설·운영에 필요한 기술능력을 확보하고 있을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1.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건설·운영에 필요한 조직 및 부서를 구성

하고, 업무수행에 요구되는 책임과 권한이 명확히 부여되어 있을 것

2.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건설·운영 중 발생하는 안전관련사항의 검토를 위한 공학적·기술적 지원조직을 갖추고 있을 것

3.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건설·운영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 책임과 권한에 상응하는 자격과 경험을 갖추고 있을 것

4. 안전 관련 주요 구조물·계통 및 기기에 대한 시험 및 검사계획을 수립하고 있을 것

제93조의2(주기적 안전성평가의 세부내용) 영 제104조의3제2항에 따른 주기적 안전성평가의 세부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설계에 관한 사항: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평가 시점에서 유효한 기준에 따라 설계(설계문서를 포함한다)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으로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하고 있을 것

가.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계통 및 기기의 목록 및 등급분류

나. 설계 문서(원본 및 개정본)

다.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 설계 시 적용한 기술기준과 현행 기술기준과의 차이

라. 심층방어 측면에서 취약하다고 확인된 사항이 안전에 미치는 영향

마. 인구밀도·산업시설 및 교통시설(공항·도로 및 철도 등)을 포함한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 주변의 특성

2.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계통 및 기기의 실제 상태에 관한 사항: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계통 및 기기의 실제 상태가 현재부터 다음 주기적 안전성평가 시점까지 설계요건을 만족하며, 그 내용이 문서화되어 있

음을 확인하는 것으로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하고 있을 것

가.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계통·기기의 건전성 및 기능 수행능력에 관한 정보

나.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계통 및 기기의 현재 상태와 진행 또는 예상되는 경년열화(經年劣化: 시간경과 또는 사용에 따라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계통·구조물·기기의 손상을 가져올 물리적 또는 화학적 과정을 말한다)에 관한 정보

다.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계통 및 기기의 기능 수행능력을 확인하기 위한 시험결과

라.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계통 및 기기의 검사결과 및 보수기록

마.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계통 및 기기에 대한 운영이력과 현재 상태

바. 보수 및 수리 작업장을 포함한 시설 내·외의 지원시설 현황

3. 안전성평가에 관한 사항: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계통 및 기기의 실제 상태, 다음 주기적 안전성평가 시점에서 예상 상태, 현행 안전성분석방법과 기술기준 및 운영기간 동안 획득한 정보를 고려하여 기존의 안전성분석이 타당성을 유지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하고 있을 것

가. 기존의 안전성평가에서 고려된 가정사항, 평가방법론 및 컴퓨터 코드에 대해 현행 기술기준과의 비교

나.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방사선 안전성평가

다.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계통 및 기기에 대한 성능 평가

라. 성능평가 및 방사선 피폭영향평가에 대한 불확실성 평가

다. 안전성평가결과로 도출된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설계 및 운영
취약점을 제거하기 위한 가능한 대안의 평가 및 비교

4. 위해도 분석에 관한 사항: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설계 및 부지특
성,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계통 및 기기의 실제 상태, 다음 주기적 안
전성평가 시점에서의 예상 상태에 대하여 현행 분석방법의 및 기술기
준을 고려하여 내·외부 위해에 대한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 방호의
타당성을 확인하는 것으로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하고 있을 것

가. 내부 위해(화재, 침수, 비산물, 독성 액체 및 기체, 폭발 등) 및 외부
위해(해일을 포함한 홍수, 강풍, 화재, 극한온도, 지진, 화산폭발, 항공
기 충돌, 독성 액체 및 기체, 폭발 등)의 예상규모와 발생빈도

나.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상태, 경년열화, 현행 기술기준, 환경영향
을 고려하여 수행한 위해도 평가결과

다. 내·외부 위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 절차

5. 기기검증에 관한 사항: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주요 안전관련 설
비가 평가 기준일로부터 10년 후까지의 기간 동안에 의도된 안전기능
을 수행할 수 있음이 검증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으로 다음 각 목
의 사항을 포함하고 있을 것

가. 기기의 검증계획에 포함된 기기목록 및 관리절차 목록

나. 기기검증 방법 및 품질보증

다. 기기고장이 기기검증에 미치는 영향분석과 기기의 검증을 유지하기
위한 적절한 시정조치

라. 불리한 환경조건으로부터 검증된 기기의 보호대책

마. 검증된 기기의 물리적인 상태와 기능성

바. 기기가 설치된 기간에 취하여진 검증조치기록

6. 경년열화에 관한 사항: 요구되는 안전 여유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구조물·계통 및 기기의 경년열화가 효과적으로 관리되고 있는지와 향후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안전운영을 위하여 적절한 경년열화 관리계획이 확립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으로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하고 있을 것

가. 평가대상 구조물·계통 및 기기의 분류 및 선정

나. 평가대상 구조물·계통 및 기기별 경년열화현상 분석

다. 경년열화현상에 따른 구조물·계통 및 기기의 기능 및 안전여유도

라. 구조물·계통 및 기기의 성능미달시점 및 미래상태 예측

마. 구조물·계통 및 기기의 경년열화 완화대책 및 관리계획

7.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 운영경험 및 연구결과의 활용에 관한 사항: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안전 성능과 운영경험에 관한 기록의 조사 및 분석, 다른 유사한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운영경험과 안전성 연구결과가 적절히 반영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하고 있을 것

가. 안전 관련 사건의 분류 및 근본원인 분석 결과 이행체계

나. 보수·시험 및 검사를 포함한 안전 관련 운영자료 선별 및 기록 방법

다. 안전 관련 운영자료에 대한 경향분석

라. 안전 성능 지표에 대한 분석

마.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 내 작업자에 대한 피폭방사선량, 방사성폐

기물관리시설등 내·외 방사선감시자료 및 방사성물질 방출량에 대한 기록

바. 유사한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운영경험·연구 결과의 반영을 위한 계획 및 체제의 적절성

사. 유사한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운영경험·연구 결과의 반영 및 조치방안

8. 운영 및 보수 등의 절차서에 관한 사항: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운영·보수·점검·시험·변경 및 비상대응을 위한 절차서가 적절한 기준에 따라 작성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하고 있을 것

가. 안전 관련 절차서 수립 및 개정 체계

나. 절차서에 대한 주기적 검토 및 보완 계획

다. 인적 요소의 원리를 고려한 절차서의 명확성

라.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설계, 운영경험, 안전성분석의 가정 및 결과와 절차서의 부합성

마. 필수 안전기능을 유지·복구하기 위한 계획

9. 조직, 관리체계 및 안전문화에 관한 사항: 조직과 행정이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안전운영을 위하여 적절하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하고 있을 것

가. 안전 목표 및 안전 우선원칙 이행을 포함한 안전체제

나. 개인과 단체의 역할 및 책임에 관하여 정한 문서

다.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 운영의 유기적 구성을 유지하기 위한 방법

라. 외부 인력 및 전문가 활용을 위한 체제

마. 직원의 교육훈련 시설 및 계획

바.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안전운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인적요소의 관리상태

사. 독립된 평가자가 포함된 정규 품질보증감사와 품질보증계획

아. 안전문화에 대한 진단, 분석, 주기적인 평가 및 안전문화 증진을 위한 이행체계

10.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20조에 따른 방사선 비상계획에 관한 사항: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 비상사태의 대응에 적합한 계획과 인원·설비 및 기기를 갖추고 있는지, 비상체제와 지방자치단체 및 중앙정부기구 간의 유기적 협조관계가 유지되고 있는지, 정기적인 훈련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하고 있을 것

가. 비상시를 위한 전략·조직 및 계획서·절차서

나. 비상시를 위한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 내 기기와 설비

다.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 내·외 비상대응설비 및 통신시설의 적합성

라. 관련 조직을 포함한 비상훈련, 경험반영 및 상호 공조체계

마. 주민 소개(疏開) 시 예상 소요시간

11. 방사선환경영향에 관한 사항: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환경영향 감시계획이 적절히 수립되어 이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하고 있을 것

가. 방사능으로 오염될 가능성이 있는 모든 유출경로에 대한 방출제한치
및 방출기록

나.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 내로부터 계획되지 아니한 유출물 방출에
대한 경보장치

다.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주변 주민에 대한 피폭방사선량

라.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 외 지역에 대한 방사선 환경감시

마. 환경감시자료의 발간 및 배포

12.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사항

가. 방사성폐기물저장시설등의 경우 해체에 관한 사항: 방사성폐기물저
장시설등의 해체계획이 적절히 수립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
으로 다음 사항을 포함하고 있을 것

- 1) 방사성폐기물저장시설등의 해체를 위한 조직, 인력, 비용 및 재원
- 2) 방사성폐기물저장시설등의 해체 전략 및 일정
- 3) 해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설계·건설·운영 시 조치사항
- 4) 방사선으로부터 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
- 5) 방사성물질등에 따른 오염의 제거 방법
- 6) 방사성폐기물의 저장·처리·처분 방법
- 7) 방사성물질등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평가 및 대책

나.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등의 경우 폐쇄 및 폐쇄 후 관리에 관한 사항: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등의 폐쇄 및 폐쇄 후 관리에 대한 계획이 적절
히 수립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다음 사항을 포함하고
있을 것

- 1)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등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폐쇄 시점
- 2) 폐쇄 대상별 · 시점별 폐쇄의 방법과 절차
- 3) 폐쇄에 따른 부지오염 최소화 방안
- 4) 폐쇄에 따른 방사선피폭영향 최소화 방법
- 5) 폐쇄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관리방법
- 6) 폐쇄 후 관리기간 설정에 대한 타당성
- 7) 폐쇄 후 관리 조직과 그 기능
- 8) 폐쇄 후 관리 항목과 수행방법 및 근거
- 9) 폐쇄 후 관리의 종료에 따른 조치계획

제93조의3(방사성폐기물저장시설등의 해체 승인 신청 등) ① 법 제68조의3 제1항 본문의 전단에 따라 방사성폐기물저장시설등의 해체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83호의2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제68조의3제2항에 따른 해체계획서 및 해체에 관한 품질보증계획서

2. 제5항에 따른 서류

② 법 제68조의3제1항 본문의 후단에 따라 방사성폐기물저장시설등의 해체 승인을 받은 자가 승인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83호의3서식의 신청서에 법 제68조의3제2항에 따른 해체승인신청서의 첨부서류 중 변경되기 전과 변경된 후의 비교표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법 제68조의3제2항에 따른 해체계획서에는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지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방사성폐기물저장시설등의 해체를 위한 조직, 인력, 비용 및 재원
2. 방사성폐기물저장시설등의 해체 전략 및 일정
3. 해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설계 시 반영한 사항 및 건설·운영 시 조치하도록 한 사항
4. 방사선으로부터 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
5. 방사성물질등에 따른 오염의 제거 방법
6. 방사성폐기물의 저장·처리·처분 방법
7. 방사성물질등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평가 및 대책
8. 그 밖에 방사성폐기물저장시설등의 해체에 따른 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④ 법 제68조의3제2항에 따른 해체에 관한 품질보증계획서에는 제4조제4항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⑤ 법 제68조의3제2항에서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영구정지시설상태보고서를 말한다.

1. 시설의 운영이력
2. 법 제64조제2항에 따라 영구정지에 관한 변경허가를 받은 시설의 최종 상태

제93조의4(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 ① 법 제68조의3제1항 단서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승인을 받은 사람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2. 방사성 폐기물 저장시설등을 운영하는 사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
3. 오기(誤記), 누락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서 그 변경 사유가 분명한 사항

② 법 제68조의3제1항 단서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해당 신고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신고서에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3조의5(해체상황 보고 등) ① 법 제68조의3제3항에 따라 방사성 폐기물 저장시설등의 해체의 보고·검사 등에 관하여는 제23조의2, 제23조의3, 제23조의4 및 제23조의5를 준용한다. 이 경우 “원자로시설”은 “방사성 폐기물 저장시설등”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방사성 폐기물 저장시설등의 해체완료 보고 시 제출하는 해체완료보고서는 별지 제83호의4서식과 같다.

제93조의6(방사성 폐기물 처분시설등의 폐쇄 승인 신청 등) ① 법 제68조의4 제1항 본문의 전단에 따라 방사성 폐기물 처분시설등의 폐쇄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83호의5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제68조의4제2항에 따른 폐쇄계획서, 폐쇄에 관한 품질보증계획서 및 폐쇄 후 관리계획서

2. 제6항에 따른 서류

② 법 제68조의4제1항 본문의 후단에 따라 방사성 폐기물 처분시설등의 폐쇄 승인을 받은 자가 승인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83호의6서식의 신청서에 법 제68조의4제2항에 따른 폐쇄승인신청서의 첨부서류 중

변경되기 전과 변경된 후의 비교표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법 제68조의4제2항에 따른 폐쇄계획서에는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지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폐쇄의 개요
2. 폐쇄하려는 시설의 종류 및 특성
3. 방사성폐기물의 처분 현황과 처분시설 상태 등 폐쇄를 정당화할 수 있는 근거
4. 폐쇄의 방법 및 절차, 주요 공정별 일정
5. 폐쇄에 관한 방사선방호
6. 폐쇄 과정에서 발생하는 방사성폐기물 및 비방사성폐기물에 대한 관리대책

④ 법 제68조의4제2항에 따른 폐쇄 후 관리계획서에는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지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폐쇄 후 관리기간
2. 폐쇄 후 관리의 조직과 책임
3. 처분된 폐기물, 처분시설 및 부지의 특성(폐쇄 후 관리의 관점에서 정량적으로 서술한다)
4. 폐쇄 후 관리방법(관리항목, 항목별 관리요령 등을 기술한다)
5. 폐쇄 후 관리업무에 대한 품질보증계획

⑤ 법 제68조의4제2항에 따른 품질보증계획서는 제4조제4항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⑥ 법 제68조의4제2항에서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최종폐쇄안전성평가보고서를 말한다.

1. 폐쇄 후 최종 부지 상태
2. 폐쇄에 따른 안전성평가

제93조의7(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 ① 법 제68조의4제1항 단서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승인을 받은 사람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2.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등을 운영하는 사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
3. 오기(誤記), 누락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서 그 변경 사유가 분명한 사항

② 법 제68조의4제1항 단서에 따라 경미한 사항을 변경신고 하려는 자는 그 신고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신고서에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3조의8(폐쇄검사의 신청 등) ① 영 제105조의5에 따른 폐쇄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83호의7서식의 신청서에 검사받으려는 시설의 개요와 수검계획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서는 영 제105조의5제3항 각 호의 시기마다 검사받으려는 날의 30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폐쇄검사를 받은 자에 대하여 합격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97조 중 “제15조의2, 제34조”를 “제15조의2”로 한다.

제110조의2부터 제110조의6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0조의2(사용후핵연료 저장용기등의 설계승인 신청) ① 영 제114조의2 제1항에 따른 승인신청서는 별지 제94호의2서식과 같다.

② 법 제77조의2제2항에 따른 안전성분석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일반사항
2. 주요 설계 요건
3. 구조 평가
4. 열 평가
5. 격납 평가
6. 차폐 평가
7. 임계 평가
8. 재료 평가
9. 운영 절차 평가
10. 성능시험 및 유지보수 계획 평가
11. 방사선방호 평가
12. 사고분석
13. 기술지침 및 운영제한조건 평가

③ 법 제77조의2제2항에 따른 설계에 관한 품질보증계획서에는 제4조제4항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④ 법 제77조의2제2항에서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외국에서 설계승인 받은 저장용기등의 경우에 해당 국가의 저장용기등에 관한 설계

승인서를 말한다.

⑤ 법 제77조의2제2항에 따른 첨부서류의 작성기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110조의3(설계승인서 발급) ① 영 제114조의2제3항에 따른 설계승인서는 별지 제94호의3서식과 같다.

② 제1항의 설계승인서 발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110조의4(사용후핵연료 저장용기등의 설계승인 변경 승인 신청) ① 영 제114조의3에 따른 변경승인신청서는 별지 제94호의4서식과 같다.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저장용기등의 설계승인 신청시의 첨부서류 중 변경되기 전과 변경된 후의 비교표

2. 설계승인서

제110조의5(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 ① 법 제77조의2제1항 단서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승인을 받은 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2. 사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

3. 제110조의2제2항에 따른 안전성분석보고서의 기재사항 중 같은 항 제1호·제9호 및 제10호에 관한 사항

4. 안전성분석보고서 및 품질보증계획서의 내용 중 품질보증체계의 조직

이 아닌 일반조직 변경에 관한 사항

5. 오기(誤記), 누락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서 그 변경 사유가
분명한 사항

② 법 제77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변경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
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2. 설계승인서

제110조의6(저장용기등의 제작검사신청) ① 영 제114조의6제1항에 따른 저
장용기등의 제작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검사를 받으려는 날의 30일 전까
지 별지 제94호의5서식에 따른 저장용기등의 제작검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제작방법에 관한 설명서
2. 제작설비에 관한 명세서
3. 시험방법·검사방법에 관한 설명서
4. 시험·검사시설 또는 검사기기의 종류 및 명세서

② 위원회는 영 제114조의6에 따른 제작검사를 받은 자에 대하여 합격 여
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별지 제4호서식 및 제78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81호서식 중 “30일”을 “24개월”로 한다.

별지 제83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83호의7서식까지 및 별지 제94호의2서식부
터 별지 제94호의5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신고인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대표자	생년월일
	사업소명	
	사업장소	전화번호
	담당부서	담당자
신고내용	승인번호 또는 허가·인가·지정증 번호	승인·허가일자
	변경사항	
	변경사유	

「원자력안전법」 제10조·제12조·제15조·제20조·제28조·제29조·제30조·제34조·제35조·제42조·제44조·제45조·제51조·제53조·제60조·제63조·제68조의3·제68조의4·제69조·제76조·제77조의2에 따라 위의 사항을 변경신고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원자력안전위원회 귀중

첨부서류	1.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허가·인가·지정증(「원자력안전법」 제10조·제12조·제20조·제30조·제35조·제45조·제53조·제63조·제68조의3 및 제68조의4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3. 설계승인서(「원자력안전법」 제60조·제76조 및 제77조의2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1. 「원자력안전법」 제10조·제12조·제15조·제20조·제28조·제29조·제30조·제34조·제35조·제42조·제44조·제63조·제68조의3·제68조의4·제69조에 따른 신고: 24개월 2. 「원자력안전법」 제45조·제51조·제53조·제60조·제76조·제77조의2에 따른 신고: 7일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접수



서류검토·통보



결과확인

신고인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신고인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건설·운영허가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24개월
신청인	본사	명칭	전화번호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사업소	명칭		
		주소		

위와 같이 「원자력안전법」 제63조,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7조에 따라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건설·운영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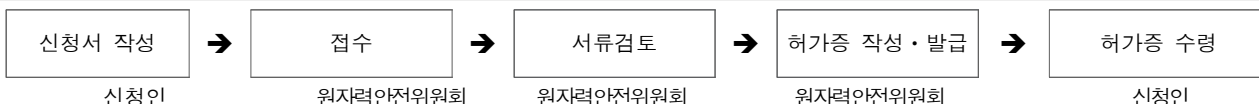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원자력안전위원회 귀중

첨부서류	1.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10부(같은 내용이 수록된 전자매체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2부) 2. 안전성분석보고서 10부(같은 내용이 수록된 전자매체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2부) 3. 안전관리규정 10부(같은 내용이 수록된 전자매체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2부) 4.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품질보증계획서 10부(같은 내용이 수록된 전자매체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2부) 5.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건설·운영계획에 관한 서류 3부(같은 내용이 수록된 전자매체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2부) 6. 방사성폐기물의 저장·처리 및 처분방법에 관한 서류 2부 7.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에 저장·처리 또는 처분할 방사성폐기물의 종류 및 수량에 관한 서류 3부(같은 내용이 수록된 전자매체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2부) 8.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건설·운영에 관한 기술능력에 관한 설명서 3부(같은 내용이 수록된 전자매체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2부) 9.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99조에 따른 장비 및 인력을 확보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3부(같은 내용이 수록된 전자매체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2부)	수수료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8에 따릅니다.
------	---	--

처리절차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사용 전 검사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24개월
신청인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대표자	생년월일		
	사업소명	담당부서		
		담당자		
	사업장소	전화번호		
	검사희망장소	검사희망일자		
시설의 가동예정일				

「원자력안전법」 제6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제10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0조에 따라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사용전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원자력안전위원회 귀중

첨부서류	검사받으려는 시설의 개요와 공사일정을 적은 서류 1부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서류검토	→	현장확인·통지	→	결과확인
신청인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신청인

방사성폐기물저장시설등 해체승인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18개월
신청인	본사 명칭	전화번호	
	대표자	생년월일	
	본사 주소		
	사업소 명칭		
	사업소 주소	전화번호	

위와 같이 「원자력안전법」 제68조의3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3조의3제1항에 따라 방사성폐기물저장시설등의 해체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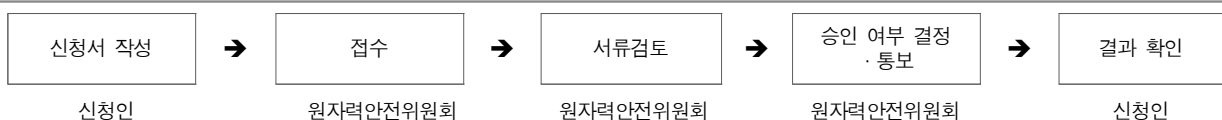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원자력안전위원회 귀중

첨부서류	1. 방사성폐기물저장시설등의 해체계획서 5부(같은 내용이 수록된 전자매체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2부) 2. 해체에 관한 품질보증계획서 5부(같은 내용이 수록된 전자매체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2부) 3. 방사성폐기물저장시설등의 영구정지시설상태보고서 5부(같은 내용이 수록된 전자매체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2부)	수수료 없음
------	---	-----------

처리절차



방사성폐기물저장시설등 해체 변경승인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12개월
신청인	본사 명칭	전화번호	
	대표자	생년월일	
	본사 주소		
	사업소 명칭		
	사업소 주소	전화번호	
신청내용	변경내용		

위와 같이 「원자력안전법」 제68조의3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의3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3조의3제2항에 따라 방사성폐기물저장시설등의 해체 변경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원자력안전위원회 귀중

첨부서류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93조의3제1항 각 호에 따른 해체승인신청서의 첨부서류 중 변경되기 전과 변경된 후의 비교표 각 5부(같은 내용이 수록된 전자매체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각 2부)		수수료 없음
------	--	--	--------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신청인

→

접수
원자력안전위원회

→

서류검토
원자력안전위원회

→

승인 여부 결정
·통보
원자력안전위원회

→

결과 확인
신청인

방사성폐기물저장시설등 해체완료보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6개월
보고인	본사 명칭	전화번호	
	대표자	생년월일	
	본사 주소		
	사업소 명칭		
	사업소 주소	전화번호	
보고내용	1. 해체 전략 및 진행경과 2. 해체 전후의 방사성폐기물저장시설등과 부지 현황 3. 방사성폐기물저장시설등과 부지의 최종 방사선·방사능 현황 및 방사성폐기물 관리 현황 4. 해체에 참여한 방사선작업종사자의 피폭방사선량 5. 해체 과정 중 발생한 비정상사건 ※ 별지 사용 가능합니다.		

위와 같이 「원자력안전법」 제68조의3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3조의5에 따라 방사성폐기물 저장시설등의 해체완료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보고인

(서명 또는 인)

원자력안전위원회 귀중

첨부서류	최종부지상태보고서 1부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보고서 작성 보고인	→	접수 원자력안전위원회	→	서류검토 원자력안전위원회	→	접수 여부 결정 ·통보 원자력안전위원회	→	결과 확인 보고인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등 폐쇄승인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18개월
신청인	본사 명칭	전화번호	
	대표자	생년월일	
	본사 주소		
	사업소 명칭		
	사업소 주소	전화번호	

위와 같이 「원자력안전법」 제68조의4제1항 및 같은 법,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의4제1항 시행규칙 제93조의6제1항에 따라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등의 폐쇄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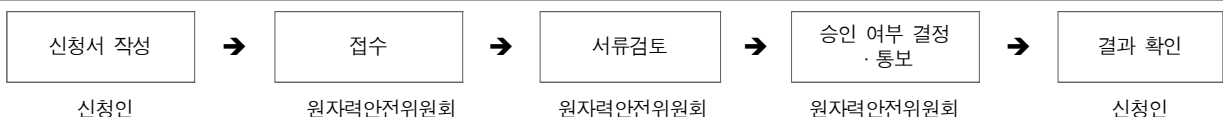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원자력안전위원회 귀중

첨부서류	1.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등의 폐쇄계획서 5부(같은 내용이 수록된 전자매체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2부) 2.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의 폐쇄 후 관리계획서 5부(같은 내용이 수록된 전자매체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2부) 3. 폐쇄에 관한 품질보증계획서 5부(같은 내용이 수록된 전자매체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2부) 4.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등의 최종폐쇄안전성평가보고서 5부(같은 내용이 수록된 전자매체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2부)	수수료 없음
------	---	--------

처리절차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등 폐쇄 변경승인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12개월
신청인	본사 명칭	전화번호	
	대표자	생년월일	
	본사 주소		
	사업소 명칭		
	사업소 주소	전화번호	
신청내용	변경내용		

위와 같이 「원자력안전법」 제68조의4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의4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3조의6제2항에 따라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등의 폐쇄 변경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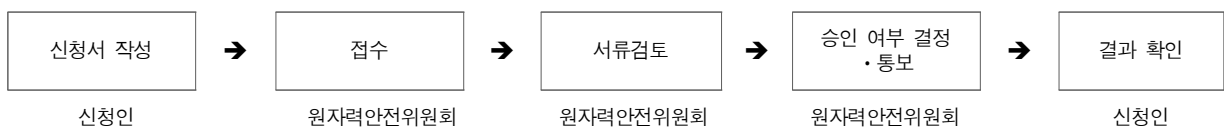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원자력안전위원회 귀중

첨부서류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93조의6제1항 각 호에 따른 폐쇄승인신청서의 첨부서류 중 변경되기 전과 변경된 후의 비교표 각 5부(같은 내용이 수록된 전자매체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각 2부)	수수료 없음
------	--	-----------

처리절차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등 폐쇄검사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24개월
신청인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대표자	생년월일	
	사업소명	담당부서	
		담당자	
사업장소	전화번호		
처분시설의 상태	(검사신청 시점에서 폐쇄의 준비 또는 진행 상황)		
폐쇄검사의 시기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05조의5제3항에 따른 구분)		
검사 대상	(폐쇄의 대상과 수행할 내용)		

「원자력안전법」 제68조의4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의5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3조의8에 따라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등의 폐쇄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원자력안전위원회 귀중

첨부서류	검사받으려는 시설의 개요와 수검계획을 적은 서류 1부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신청인	→ 접수 원자력안전위원회	→ 서류검토 원자력안전위원회
	→ 현장확인 원자력안전위원회	→ 통 지 신청인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사용후핵연료 저장용기등 설계승인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18개월
신청인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대표자	생년월일		
	사업소명	담당부서		
		담당자		
사업장소	전화번호			
신청내용	사업자분류			
	저장용기등 종류			

「원자력안전법」 제77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14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0조의2제1항에 따라 사용후핵연료 저장용기등의 설계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원자력안전위원회 귀중

첨부서류	1. 저장용기등의 안전성분석보고서 3부(같은 내용이 수록된 전자매체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2부) 2. 설계에 관한 품질보증계획서(제작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3부(같은 내용이 수록된 전자매체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2부) 3. 해당국가 저장용기등 설계승인서 (외국에서 설계승인 받은 저장용기등의 경우)	수수료 없음
------	--	-----------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서류검토	→	승인서 작성·발급	→	승인서 수령
신청인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신청인

제 호			
사용후핵연료 저장용기등 설계승인서			
상 호			
소 재 자			
대 표 자		생 년 월 일	
설계승인번호			
저장용기등의 형 식		도 면 별 첨	
사용후핵연료 특 성			
승 인 조 건			
승 인 일 자			
위와 같이 「원자력안전법」 제77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14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0조의3에 따라 사용후핵연료 저장용기등의 설계승인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직인			

(뒤쪽)

[illegible]

사용후핵연료 저장용기등 설계변경승인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18개월	

신청인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대표자	생년월일
	사업소명	담당부서
		담당자
사업장소	전화번호	

신청내용	사업자분류
	설계승인 번호
	승인일자
	설계변경 사유

「원자력안전법」 제77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14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0조의4제1항에 따라 사용후핵연료 저장용기등의 설계변경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원자력안전위원회 귀중

첨부서류	1. 저장용기등의 설계승인 신청시의 첨부서류 중 변경되기 전과 변경된 후의 비교표 각 3부 (같은 내용이 수록된 전자매체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2부) 2. 설계승인서 1부	수수료 없음
------	--	-----------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신청인	→	접수 원자력안전위원회	→	서류검토 원자력안전위원회
		→	승인서 작성·발급 원자력안전위원회	→
			승인서 수령 신청인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사용후핵연료 저장용기등 제작검사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24개월	
신청인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대표자	생년월일	
	사업소명		
	사업장소	전화번호	
	담당부서	담당자	
	사업자분류	설계승인번호(승인연도)	
	저장용기등 종류	제작검사수량	

「원자력안전법」 제77조의3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4조의6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0조의6제1항에 따라 사용후핵연료저장용기등의 제작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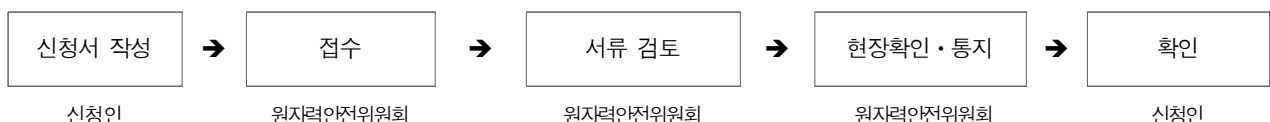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원자력안전위원회 귀중

첨부서류	1. 제작방법에 관한 설명서 1부 2. 제작설비 명세서 1부 3. 시험방법·검사방법에 관한 설명서 1부 4. 시험·검사시설 또는 검사기기의 종류 및 명세서 1부	수수료 없음
------	--	-----------

처리절차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7조(방사성 폐기물관리시설등의 건설·운영허가의 신청 등) ①·② (생략) ③ 법 제63조제2항에 따른 안전 성분석보고서에는 위원회가 정 하여 고시하는 지침에 따라 다 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 4. (생략) <u>5. 부지폐쇄 및 폐쇄 후 관리</u>	제87조(방사성 폐기물관리시설등의 건설·운영허가의 신청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 -----. 1. ~ 4. (현행과 같음) <u>5.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사 항</u> <u>가. 방사성폐기물의 저장·처 리 시설 및 그 부속시설(이하 “방사성 폐기물저장시설 등”이라 한다)을 건설·운영 하려는 자의 경우: 해체계획 나. 방사성폐기물의 처분시설 및 그 부속시설(이하 “방사 성 폐기물 처분 시설등”이라 한다)을 건설·운영하려는 자의 경우: 폐쇄 및 폐쇄 후 관리</u> 6. ~ 8. (현행과 같음) ④ ----- ----- -----. 1. ----- <u>저장·처리 · 처분 시설</u> -----
6. ~ 8. (생략) ④ 법 제63조제2항에 따른 안전 관리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 항을 적어야 한다. 1. 방사성폐기물의 <u>저장·처리 · 처분시설</u> 및 부속시설(이하	

“방사성 폐기물관리시설등”이라 한다)의 운영·관리조직 및 그 기능에 관한 사항

2. ~ 18. (생략)

⑤·⑥ (생략)

<신설>

⑦ (생략)

<신설>

2. ~ 18. (현행과 같음)

⑤·⑥ (현행과 같음)

⑦ 법 제63조제2항에 따른 허가 신청서를 제출받은 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⑧ (현행 제7항과 같음)

제89조의2(기술능력) 법 제64조제1항제1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사성 폐기물관리시설등의 건설·운영에 필요한 기술능력을 확보하고 있을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1. 방사성 폐기물관리시설등의 건설·운영에 필요한 조직 및 부서를 구성하고, 업무수행에 요구되는 책임과 권한이 명확히 부여되어 있을 것

2. 방사성 폐기물관리시설등의 건설·운영 중 발생하는 안전 관련사항의 검토를 위한 공학적·기술적 지원조직을 갖추고

<신 설>

있을 것

3.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건설·운영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 책임과 권한에 상응하는 자
격과 경험을 갖추고 있을 것

4. 안전 관련 주요 구조물·계
통 및 기기에 대한 시험 및 검
사계획을 수립하고 있을 것

제93조의2(주기적 안전성평가의
세부내용) 영 제104조의3제2항
에 따른 주기적 안전성평가의
세부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설계에 관한 사항: 방사성폐기
물관리시설등의 평가 시점에서
유효한 기준에 따라 설계(설계
문서를 포함한다)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으로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하고 있을 것

가.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
계통 및 기기의 목록 및 등
급분류

나. 설계 문서(원본 및 개정
본)

다.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
설계 시 적용한 기술기준과
현행 기술기준과의 차이

라. 심층방어 측면에서 취약
하다고 확인된 사항이 안전

에 미치는 영향

마. 인구밀도 · 산업시설 및
교통시설(공항 · 도로 및 철
도 등)을 포함한 방사성폐기
물관리시설등 주변의 특성

2.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 · 계통
및 기기의 실제 상태에 관한
사항: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 ·
계통 및 기기의 실제 상태가
현재부터 다음 주기적 안전성
평가 시점까지 설계요건을 만
족하며, 그 내용이 문서화되어
있음을 확인하는 것으로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하고 있을
것

가.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 ·
계통 · 기기의 건전성 및 기
능 수행능력에 관한 정보

나.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 ·
계통 및 기기의 현재 상태와
진행 또는 예상되는 경년열
화(經年劣化: 시간경과 또는
사용에 따라 방사성폐기물관
리시설등의 계통 · 구조물 ·
기기의 손상을 가져올 물리
적 또는 화학적 과정을 말한
다)에 관한 정보

다.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 ·
계통 및 기기의 기능 수행능

력을 확인하기 위한 시험결과

라.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 · 계통 및 기기의 검사결과 및 보수기록

마.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 · 계통 및 기기에 대한 운영이력과 현재 상태

바. 보수 및 수리 작업장을 포함한 시설 내 · 외의 지원시설 현황

3. 안전성평가에 관한 사항: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 · 계통 및 기기의 실제 상태, 다음 주기적 안전성평가 시점에서 예상 상태, 현행 안전성분석방법과 기술기준 및 운영기간 동안 획득한 정보를 고려하여 기존의 안전성분석이 타당성을 유지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하고 있을 것

가. 기존의 안전성평가에서 고려된 가정사항, 평가방법론 및 컴퓨터 코드에 대해 현행 기술기준과의 비교

나.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방사선 안전성평가

다.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 ·

계통 및 기기에 대한 성능
평가

라. 성능평가 및 방사선 피폭
영향평가에 대한 불확실성
평가

마. 안전성평가결과로 도출된
방사성 폐기물 관리시설등의
설계 및 운영 취약점을 제거
하기 위한 가능한 대안의 평
가 및 비교

4. 위해도 분석에 관한 사항: 방
사성 폐기물관리시설등의 설계
및 부지특성, 안전에 중요한 구
조물·계통 및 기기의 실제 상
태, 다음 주기적 안전성평가 시
점에서의 예상 상태에 대하여
현행 분석방법의 및 기술기준
을 고려하여 내·외부 위해에
대한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
방호의 타당성을 확인하는 것
으로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
함하고 있을 것

가. 내부 위해(화재, 침수, 비
산물, 독성 액체 및 기체, 폭
발 등) 및 외부 위해(해일을
포함한 홍수, 강풍, 화재, 극
한온도, 지진, 화산폭발, 항
공기 충돌, 독성 액체 및 기
체, 폭발 등)의 예상규모와

발생빈도

나.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상태, 경년열화, 현행 기술기준, 환경영향을 고려하여 수행한 위해도 평가결과
다. 내·외부 위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 절차

5. 기기검증에 관한 사항: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주요 안전관련 설비가 평가 기준일로부터 10년 후까지의 기간 동안에 의도된 안전기능을 수행할 수 있음이 검증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으로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하고 있을 것

가. 기기의 검증계획에 포함된 기기목록 및 관리절차 목록

나. 기기검증 방법 및 품질보증

다. 기기고장이 기기검증에 미치는 영향분석과 기기의 검증을 유지하기 위한 적절한 시정조치

라. 불리한 환경조건으로부터 검증된 기기의 보호대책

마. 검증된 기기의 물리적인 상태와 기능성

바. 기기가 설치된 기간에 취

하여진 검증조치기록

6. 경년열화에 관한 사항: 요구되는 안전 여유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 등의 구조물·계통 및 기기의 경년열화가 효과적으로 관리되고 있는지와 향후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안전운영을 위하여 적절한 경년열화 관리계획이 확립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으로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하고 있을 것

가. 평가대상 구조물·계통 및 기기의 분류 및 선정

나. 평가대상 구조물·계통 및 기기별 경년열화현상 분석

다. 경년열화현상에 따른 구조물·계통 및 기기의 기능 및 안전여유도

라. 구조물·계통 및 기기의 성능미달시점 및 미래상태 예측

마. 구조물·계통 및 기기의 경년열화 완화대책 및 관리 계획

7.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 운영경험 및 연구결과의 활용에 관한 사항: 방사성폐기물관리

시설등의 안전 성과와 운영경험에 관한 기록의 조사 및 분석, 다른 유사한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운영경험과 안전성 연구결과가 적절히 반영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다음 각목의 사항을 포함하고 있을 것

가. 안전 관련 사건의 분류 및 근본원인 분석 결과 이행체계

나. 보수·시험 및 검사를 포함한 안전 관련 운영자료 선별 및 기록 방법

다. 안전 관련 운영자료에 대한 경향분석

라. 안전 성능 지표에 대한 분석

마.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 내 작업자에 대한 피폭방사선량,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 내·외 방사선감시자료 및 방사성물질 방출량에 대한 기록

바. 유사한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운영경험·연구 결과의 반영을 위한 계획 및 체제의 적절성

사. 유사한 방사성폐기물관리

시설등의 운영경험·연구 결과의 반영 및 조치방안

8. 운영 및 보수 등의 절차서에 관한 사항: 방사성폐기물관리 시설등의 운영·보수·점검·시험·변경 및 비상대응을 위한 절차서가 적절한 기준에 따라 작성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하고 있을 것

가. 안전 관련 절차서 수립 및 개정 체계

나. 절차서에 대한 주기적 검토 및 보완 계획

다. 인적 요소의 원리를 고려한 절차서의 명확성

라.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설계, 운영경험, 안전성분석의 가정 및 결과와 절차서의 부합성

마. 필수 안전기능을 유지·복구하기 위한 계획

9. 조직, 관리체계 및 안전문화에 관한 사항: 조직과 행정이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안전운영을 위하여 적절하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하고 있을 것

가. 안전 목표 및 안전 우선원칙 이행을 포함한 안전체제
나. 개인과 단체의 역할 및 책임에 관하여 정한 문서

다.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 운영의 유기적 구성을 유지하기 위한 방법

라. 외부 인력 및 전문가 활용을 위한 체제

마. 직원의 교육훈련 시설 및 계획

바.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안전운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인적요소의 관리상태

사. 독립된 평가자가 포함된 정규 품질보증감사와 품질보증계획

아. 안전문화에 대한 진단, 분석, 주기적인 평가 및 안전문화 증진을 위한 이행체계

10.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20조에 따른 방사선 비상계획에 관한 사항: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 비상사태의 대응에 적합한 계획과 인원·설비 및 기기를 갖추고 있는지, 비상체제와 지방자치단체 및 중앙정부기관과의 유기적 협조관계가 유지

되고 있는지, 정기적인 훈련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하고 있을 것

가. 비상시를 위한 전략·조직 및 계획서·절차서

나. 비상시를 위한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 내 기기와 설비

다. 방사성 폐기물관리시설등 내·외 비상대응설비 및 통신시설의 적합성

라. 관련 조직을 포함한 비상훈련, 경험반영 및 상호 공조체계

마. 주민 소개(疏開) 시 예상 소요시간

11. 방사선환경영향에 관한 사항: 방사성 폐기물관리시설등의 환경영향 감시계획이 적절히 수립되어 이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하고 있을 것

가. 방사능으로 오염될 가능성이 있는 모든 유출경로에 대한 방출제한치 및 방출기록

나. 방사성 폐기물관리시설등 내로부터 계획되지 아니한

유출물 방출에 대한 경보장치

다.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주변 주민에 대한 피폭방사선량

라.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지역에 대한 방사성선 환경감시

마. 환경감시자료의 발간 및 배포

12.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사항

가. 방사성폐기물저장시설등의 경우 해체에 관한 사항: 방사성폐기물저장시설등의 해체계획이 적절히 수립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다음 사항을 포함하고 있을 것

1) 방사성폐기물저장시설등의 해체를 위한 조직, 인력, 비용 및 재원

2) 방사성폐기물저장시설등의 해체 전략 및 일정

3) 해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설계·건설·운영시 조치사항

4) 방사선으로부터 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

5) 방사성물질등에 따른 오

염의 제거 방법

6) 방사성폐기물의 저장 ·

처리 · 처분 방법

7) 방사성물질등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평가 및

대책

나.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등

의 경우 폐쇄 및 폐쇄 후 관

리에 관한 사항: 방사성폐기

물처분시설등의 폐쇄 및 폐

쇄 후 관리에 대한 계획이

적절히 수립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다음

사항을 포함하고 있을 것

1)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

등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폐쇄 시점

2) 폐쇄 대상별 · 시점별 폐

쇄의 방법과 절차

3) 폐쇄에 따른 부지오염

최소화 방안

4) 폐쇄에 따른 방사선피폭

<신 설>

영향 최소화 방법

5) 폐쇄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관리방법

6) 폐쇄 후 관리기간 설정

에 대한 타당성

7) 폐쇄 후 관리 조직과 그

기능

8) 폐쇄 후 관리 항목과 수

행방법 및 근거

9) 폐쇄 후 관리의 종료에

따른 조치계획

제93조의3(방사성 폐기물저장시설

등의 해체 승인 신청 등) ① 법

제68조의3제1항 본문의 전단에

따라 방사성폐기물저장시설등

의 해체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83호의2서식의 신청서

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

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제68조의3제2항에 따른

해체계획서 및 해체에 관한 품

질보증계획서

2. 제5항에 따른 서류

② 법 제68조의3제1항 본문의

후단에 따라 방사성폐기물저장

시설등의 해체 승인을 받은 자

가 승인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83호의3서식의 신청서에 법 제68조의3제2항에 따른 해체승인신청서의 첨부서류 중 변경되기 전과 변경된 후의 비교표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법 제68조의3제2항에 따른 해체계획서에는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지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방사성폐기물저장시설등의 해체를 위한 조직, 인력, 비용 및 재원
2. 방사성폐기물저장시설등의 해체 전략 및 일정
3. 해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설계 시 반영한 사항 및 건설·운영 시 조치하도록 한 사항
4. 방사선으로부터 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
5. 방사성물질등에 따른 오염의 제거 방법
6. 방사성폐기물의 저장·처리·처분 방법
7. 방사성물질등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평가 및 대책
8. 그 밖에 방사성폐기물저장시

<신 설>

설등의 해체에 따른 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④ 법 제68조의3제2항에 따른 해체에 관한 품질보증계획서에는 제4조제4항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⑤ 법 제68조의3제2항에서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영구정지시설상태보고서를 말한다.

1. 시설의 운영이력

2. 법 제64조제2항에 따라 영구정지에 관한 변경허가를 받은 시설의 최종 상태

제93조의4(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 ① 법 제68조의3제1항 단서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승인을 받은 사람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2. 방사성폐기물저장시설등을 운영하는 사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

3. 오기(誤記), 누락 또는 그 밖

<신 설>

<신 설>

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서 그
변경 사유가 분명한 사항

② 법 제68조의3제1항 단서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해당 신고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신고서에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
하여야 한다.

제93조의5(해체상황 보고 등) ①

법 제68조의3제3항에 따라 방사
성 폐기물 저장시설등의 해체의
보고·검사 등에 관하여는 제23
조의2, 제23조의3, 제23조의4 및
제23조의5를 준용한다. 이 경우
“원자로시설”은 “방사성 폐기물
저장시설등”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방사성 폐기물
저장시설등의 해체완료 보고 시
제출하는 해체완료보고서는 별
지 제83호의4서식과 같다.

제93조의6(방사성 폐기물처분시설

등의 폐쇄 승인 신청 등) ① 법
제68조의4제1항 본문의 전단에
따라 방사성 폐기물처분시설등
의 폐쇄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83호의5서식의 신청서
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
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제68조의4제2항에 따른 폐쇄계획서, 폐쇄에 관한 품질 보증계획서 및 폐쇄 후 관리계획서

2. 제6항에 따른 서류

② 법 제68조의4제1항 본문의 후단에 따라 방사성폐기물처분 시설등의 폐쇄 승인을 받은 자가 승인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83호의6서식의 신청서에 법 제68조의4제2항에 따른 폐쇄승인신청서의 첨부서류 중 변경되기 전과 변경된 후의 비교표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법 제68조의4제2항에 따른 폐쇄계획서에는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지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폐쇄의 개요

2. 폐쇄하려는 시설의 종류 및 특성

3. 방사성폐기물의 처분 현황과 처분시설 상태 등 폐쇄를 정당화할 수 있는 근거

4. 폐쇄의 방법 및 절차, 주요 공정별 일정

5. 폐쇄에 관한 방사선방호

6. 폐쇄 과정에서 발생하는 방

사성폐기물 및 비방사성폐기물
에 대한 관리대책

④ 법 제68조의4제2항에 따른
폐쇄 후 관리계획서에는 위원회
가 정하여 고시하는 지침에 따
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폐쇄 후 관리기간
2. 폐쇄 후 관리의 조직과 책임
3. 처분된 폐기물, 처분시설 및
부지의 특성(폐쇄 후 관리의
관점에서 정량적으로 서술한
다)
4. 폐쇄 후 관리방법(관리항목,
항목별 관리요령 등을 기술한
다)
5. 폐쇄 후 관리업무에 대한 품
질보증계획

⑤ 법 제68조의4제2항에 따른
품질보증계획서는 제4조제4항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⑥ 법 제68조의4제2항에서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
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최종폐쇄안전성평가보고서를
말한다.

1. 폐쇄 후 최종 부지 상태
2. 폐쇄에 따른 안전성평가

제93조의7(경미한 사항의 변경신

<신 설>

<신 설>

고) ① 법 제68조의4제1항 단서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승인을 받은 사람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2.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등을 운영하는 사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

3. 오기(誤記), 누락 또는 그 밖
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서 그
변경 사유가 분명한 사항

② 법 제68조의4제1항 단서에 따라 경미한 사항을 변경신고하려는 자는 그 신고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신고서에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3조의8(폐쇄검사의 신청 등)

① 영 제105조의5에 따른 폐쇄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83호의7서식의 신청서에 검사받으려는 시설의 개요와 수검계획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서는 영 제105

제97조(준용규정) 법 제63조제1항
에 따른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
등의 건설·운영허가를 받은 자
에 관하여는 제13조, 제14조, 제
15조의2, 제34조 및 제38조를
준용한다.

<신 설>

조의5제3항 각 호의 시기마다
검사받으려는 날의 30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폐쇄
검사를 받은 자에 대하여 합격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97조(준용규정) -----

----- 제
15조의2 -----
-----.

제110조의2(사용후핵연료 저장용
기등의 설계승인 신청) ① 영
제114조의2제1항에 따른 승인
신청서는 별지 제94호의2서식
과 같다.

② 법 제77조의2제2항에 따른
안전성분석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일반사항
2. 주요 설계 요건
3. 구조 평가
4. 열 평가
5. 격납 평가
6. 차폐 평가
7. 임계 평가
8. 재료 평가
9. 운영 절차 평가

<신 설>

<신 설>

10. 성능시험 및 유지보수 계획
평가

11. 방사선방호 평가

12. 사고분석

13. 기술지침 및 운영제한조건
평가

③ 법 제77조의2제2항에 따른
설계에 관한 품질보증계획서
는 제4조제4항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④ 법 제77조의2제2항에서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
란 외국에서 설계승인 받은 저
장용기등의 경우에 해당 국가의
저장용기등에 관한 설계승인서
를 말한다.

⑤ 법 제77조의2제2항에 따른
첨부서류의 작성기준 및 그 밖
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가 정
하여 고시한다.

제110조의3(설계승인서 발급) ①
영 제114조의2제3항에 따른 설
계승인서는 별지 제94호의3서
식과 같다.

② 제1항의 설계승인서 발급 등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
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110조의4(사용후핵연료 저장용
기등의 설계승인 변경 승인 신

<신 설>

청) ① 영 제114조의3에 따른
변경승인신청서는 별지 제94호
의4서식과 같다.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저장용기등의 설계승인 신청
시의 첨부서류 중 변경되기 전
과 변경된 후의 비교표

2. 설계승인서

제110조의5(경미한 사항의 변경신

고) ① 법 제77조의2제1항 단서
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미
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
한다.

1. 승인을 받은 자의 성명 및 주
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2. 사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

3. 제110조의2제2항에 따른 안
전성분석보고서의 기재사항 중
같은 항 제1호·제9호 및 제10
호에 관한 사항

4. 안전성분석보고서 및 품질보
증계획서의 내용 중 품질보증
체계의 조직이 아닌 일반조직
변경에 관한 사항

5. 오기(誤記), 누락 또는 그 밖
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서 그

<신 설>

변경 사유가 분명한 사항

② 법 제77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변경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2. 설계승인서

제110조의6(저장용기등의 제작검사신청) ① 영 제114조의6제1항에 따른 저장용기등의 제작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검사를 받으려는 날의 30일 전까지 별지 제94호의5서식에 따른 저장용기등의 제작검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제작방법에 관한 설명서

2. 제작설비에 관한 명세서

3. 시험방법·검사방법에 관한 설명서

4. 시험·검사시설 또는 검사기기의 종류 및 명세서

② 위원회는 영 제114조의6에 따른 제작검사를 받은 자에 대하여 합격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